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요약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기준

목적

본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 임시 지침 혹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 코로나 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사업체/리그/단체 소유자/운영자 및 직원, 고객/선수/관중에게 코로나 19 확산 예방법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의 결정으로 허가된 실외, 저위험군 레크리에이션 활동용으로, 주 전역에서 즉시 발효됩니다.

- 테니스,
- 노를 젓는 보트, 카약, 카누 등 비전동식 보트 사용, 대여,
- 골프 연습장(현재 해당 지역 내에서 제한되는 음식 및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니 골프 제외),
- 배드민턴, 라켓볼 등 라켓 게임,
- 호스 슈즈, 보치, 쿡 주머니 던지기, 크로케 등 던지기/굴리기 게임,
- 디스크 골프, 프리스비 등 원반 던지기 게임,
- 서플보드,
- 집라인,
- 공중 로프 코스를 포함한 로프 코스,
- 야구 연습장,
- 사격장,
- 수영 교실 및 수영 지도.

본 지침은 여기에 나온 모든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용으로서 주정부의 재개방 3 단계를 시작했거나 지난 지역에서 2020년 7월 6일에 발효됩니다. 2020년 7월 6일까지 3 단계를 시작하지 않은 지역은 3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의 결정으로 주 전역에서 허가된 실외, 저위험군 레크리에이션 활동만 허가됩니다.

본 지침은 비전문 및 비대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예: 청소년 스포츠)에 적용되며 이는 실내 및 실외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단체 및 비단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합니다.

본 지침은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닝 시설, 기타 관련 시설에서 하는 실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기타 해당 시설은 지역에서 제한하는 비필수 모임 인원수 이상 참가할 수 없으며 현재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기타 시설은 실내 활동이 금지됩니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관한 보충 지침은 본 지침에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본 지침은 전문 스포츠, 트레이닝 시설에 적용되지 않으며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s, DOH)는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전문 스포츠 트레이닝 시설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rofessional Sports Training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서 해당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본 지침은 최소 요건일 뿐이므로 운영자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추가하거나 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발행 당시 가장 잘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에 기반하며,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한 자료는 자주 바뀔 수 있으며, 자주 바뀝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최신 요건을 알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경

2020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 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 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사업체는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 호를 발행했습니다. 안면 가리개는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17 호를 발표하여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 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34 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 운영자/소유자에게 입장을 거부할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 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재개 2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Cuomo 주지사는 6월 12일에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더하여 보건부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가 발행한 지침과 명령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본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가 발행한 다른 지침 문서와 다를 경우 최신 지침이 적용됩니다.

뉴욕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책임 기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은 다음과 같은 최소 주 기준을 따라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방 요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모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적용됩니다. 단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사업체/리그/단체 소유자/운영자 또는 해당 운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모두 "책임 당사자")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단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의 개인은 활동에 적용되는 경우 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인 세 가지 뚜렷한 범주로 정리되었습니다.

I. 사람

A. 스포츠 분류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가 자격은 (1)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체에 내재하고 (2) "플레이 종류(예: 개인 연습 대 시합)"와 관련된 코로나 19 전염 위험성과 통합하여 결정됩니다.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저위험군", "중간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 **저위험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음 및/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음,
 - (1) 공유 장비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음, 또는 (2)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마다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할 수 있음, (3)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저위험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예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개인 달리기,
 - 야구 연습장,
 - 사냥/사격/활쏘기
 - 골프,
 - 미니골프,
 - 노를 짓는 보트, 카약, 카누 등 비전동식 보트,
 - 단식 테니스,
 - 암벽 등반,
 - 개인 수영,
 - 개인 조정,
 -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 호스 슈즈, 보치, 쿡 주머니 던지기 등 던지기/굴리기 게임,
 - 디스크 골프, 프리스비 등 원반 던지기 게임,
 - 로프 코스, 및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거나 장비 공유 전 청소 및 소독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 **중간 위험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개인적으로 하는 데 제한이 있음,

- 다음 사항에 제한 있음: (1) 공유 장비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음, 또는 (2) 사용할 때마다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할 수 있음, (3)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중간 위험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예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야구,
 - 소프트볼,
 - 복식 테니스,
 - 배드민턴, 라켓볼 등 라켓 게임,
 - 수구,
 - 체조,
 - 필드하키,
 - 접촉 없는 라크로스,
 - 수영 릴레이,
 - 축구,
 - 두 명 이상 노를 젓는 조정,
 - 래프팅,
 - 페인트볼, 및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거나 장비 공유 전 청소 및 소독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 **고위험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개인적으로 하는 데 큰 제한이 있음,
 - 다음 사항에 큰 제한 있음: (1) 공유 장비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음, 또는 (2) 사용할 때마다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할 수 있음, (3)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위험군 스포츠 활동 예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미식축구
 - 레슬링,
 - 아이스하키,
 - 럭비,
 - 농구,
 - 접촉 있는 라크로스,
 - 배구
 - 응원단 및 그룹 댄스, 및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거나 장비 공유 전 청소 및 소독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 "플레이 유형" 위험성은 보통 다음과 같이 가장 낮은 위험성에서 가장 높은 위험성의 범위로 정의됩니다.
 - 개별 트레이닝 또는 거리를 둔 그룹 트레이닝, 활동(예: 농구 슛 연습, 골프, 암벽 등반),
 - 접촉 없는/적은 단체 트레이닝(예: 스포츠 캠프 및 강습),
 - 경쟁 팀 연습,
 - 경기, 회의, 시합, 연습 경기(예: 단체 리그, 즉석 스포츠), 및
 - 이동이 필요하며 여러 경기, 회의, 시합, 연습 경기로 이루어진 토너먼트.
- 즉시 발효되며 본 지침에 따르고 앰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의 결정에 의해 주 전역에서 허가된 실외, 저위험군 레크리에이션 활동(위에 명시됨)은 모든 플레이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한 토너먼트는 제외합니다.

- 주정부 재개방 3 단계를 시작했거나 지난 지역에서 2020년 7월 6일부터 발효되며 본 지침에 따르는 저위험군, 중간 위험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가자는 모든 플레이 유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한 토너먼트는 제외합니다. 고위험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가자는 개별 트레이닝 또는 거리를 둔 단체 트레이닝 및 접촉 없는/적은 그룹 트레이닝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B. 물리적 거리 두기

- 책임 당사자는 실내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 점유 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의 수용량을 직원 및 고객/선수/관중을 포함하여 최대 점유율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중을 선수 당 두 명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실내와 실외에서 사람 간 항상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활동(예: 연습, 플레이)에 6 피트 이하의 거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는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신체 활동(예: 연습, 플레이) 시 얼굴 가리개를 견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코치, 트레이너 및 신체 활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기타인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에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 일회용 마스크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참가 수속 또는 예약 데스크의 직원이 다른 직원 및 고객/선수/관중으로부터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과 다른 사람 사이 물리적 차단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원이 고객/선수/관중과 소통할 때(예: 예약 데스크 운영)는 항상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물리적 차단막을 사용하는 경우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 지침을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차단막 종류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글라스 또는 유사 자재, 기타 불투과성 칸막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선수에게 비접촉식 결제 수단 또는 선불, 예약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고객 카드, 모바일 장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사방에서 6 피트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장 운동, 훈련, 기타 연습 활동 시에는 6 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고객/선수/관중과 소통할 때 물리적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또는 구역 내 직원 및 고객/선수/관중이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일방 줄 만들기, 유동 인구 조정하기, 다른 계산대/예약 데스크 사용하기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공간(예: 계산대 뒤, 장비 확인실)을 한 번에 두 명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더라도 최대 공간 또는 차량 점유율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공간 또는 차량은 제외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실내 구역과 주로 줄이 생기는 장소 또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장소(예: 출퇴근 기록 장소, 건강 검진 장소, 휴게소, 장비 확인실, 계산대, 탈의실 등)에 6 피트 공간을 나타내는 신호 및 거리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업장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 19 신호와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가 작업 공간 또는 장소에 맞게 표지판을 만드는 경우 보건부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신호는 사람들이 다음 사항을 기억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 얼굴 가리개로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
 -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적절히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십시오.
 -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이에 노출된 경우 보고하십시오(보고 방법 포함).
 - 손 위생, 세척, 소독 지침에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기 위생 및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 머무십시오.
- 관중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안전 조치가 적용됩니다.
 - 스포츠 행사(예: 경기) 시 책임 당사자는 관중을 선수 당 두 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관중이 항상 서로 및/또는 가족/식구 사이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관중은 공동 구역 및 6 피트의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바닥 또는 좌석 구역에 표시하거나 기타 신호를 통해 적절한 거리 두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관중 사이의 개별 집단 인원이 해당 지역에서 현재 발효 중인 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집단이 적절한 모임 규모 지침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신호를 사용하거나 직원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C. 폐쇄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의 대면 모임(예: 직원 회의, 창고)을 제한하고 질병관리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개방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직원 대면 회의를 열어야 하며 직원이 서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거나(예: 의자에 앉는 경우 의자 사이 간격을 띄우고 한 의자씩 거르고 앉기) 적절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소 등 좁은 공간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신호 체계(예: 사용 중 표시)를 만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임(예: 쉬는 시간, 식사 및 근무 시작/중지) 시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즉 6 피트 공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나누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선수 및/또는 팀의 시설 사용 일정에 시차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D. 현장 활동

- 집단 소통이 수반될 수 있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
 - 책임 당사자는 해당하는 경우 원격 체크인(인터넷 또는 전화)을 이용하기 바랍니다(예: 코트, 티타임 예약).
 - 책임 당사자는 고객/선수 간 장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선수/관중이 직접 접촉을 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예: 악수, 하이파이브, 주먹 인사, 포옹)
 - 질병관리센터의 "청소년 스포츠용 고려 사항"(Considerations for Youth Sports)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골프 코스 및 연습장에서 책임 당사자는 선수가 다음과 같은 추가 안전 조치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티타임을 4 명으로 제한하십시오. 한집 식구는 제외합니다.
 - 골프 카트에 시야나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물리적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한 사람 또는 한집 식구만 이용하도록 제한하십시오. 각 팀이 사용한 후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 가능한 경우 골프 가방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 티타임 예약과 원격 체크인을 이용해보십시오(인터넷 또는 전화로).
 - 가능한 한 골프장 사용료 결제를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만(예: 현금 불가) 사용하는 비접촉식 수단으로 플레이 시 처리하십시오. 골프장은 전화 선불 결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벙커 레이크, 불위서, 음료수 냉각기 사용을 금지하십시오(직원/관리 담당자 제외).
 - 골프 코치가 선수와 접촉하지 않고 항상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물리적 차단막으로 분리된 경우는 제외) 코스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십시오.
 - 한집 식구가 아닌 경우 티/특점표/연필/볼 마커를 공유하지 않도록 금지하십시오. 해당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클럽 및 장비는 플레이어가 사용하기 전후에 청소 및 소독한 경우에만 대여를 허가하십시오.
 - 임시 사용 규정을 나타내는 메시지 및 신호를 게시하십시오.
- 비전동식 보트 레크리에이션 활동(예: 카약, 카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안전 조치가 적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서로 6 피트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한집 식구는 제외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장비를 빌려줄(해당하는 경우)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실외 피트니스 수업(예: 요가)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안전 조치가 적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수업 규모를 해당 지역에서 발효 중인 사회 모임 규제에 따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다른 고객 및 수업 강사와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예: 무술, 권투) 고위험군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에서 직접 자세를 교정해 주지(예: 요가, 필라테스) 않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자신의 장비(예: 요가 매트)를 가져오라고 권장하거나 고객용 장비가 사용될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정해진 수업에 등록하여 참가하는 운동 "조편성 제도"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즉 매번 같은 사람들끼리 운동하기).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 간 접촉 및 모임을 줄여야 합니다.
 - 영업 시간 조정하기,
 -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인력 줄이기,
 - 근무 시간 설계하기(예: A/B 팀, 출발/도착 시차),
 -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 활동 나누기,
 - 전화, 라디오, 복사기, 인쇄기, 금전 등록기 등 사무실 장비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규약 만들기, 및/또는
 - 사용할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할 수 없는 스포츠 장비 공유 금지하기.
- 책임 당사자는 보건부 지침 "코로나 19: 비의료 서비스 제공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일반 지침"(COVID-19: General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ng for Non-Health Care Settings)에 따라 강화된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예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객/선수/관중의 도착 및 출발 시간을 나누어 붐비지 않도록 특정 방문 시간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예: 정해진 출입 시간).
- 책임 당사자는 해당 시설 또는 구역에서 최대 수용 요건을 따르도록 유동 인구를 모니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 이동 및 거래

- 책임 당사자는 해당 공간에서 걸어 다니는 고객/선수/관중의 양방향 도보 인구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단막, 테이프, 표지판을 사용하여 보도, 산책로, 복도, 통로에 화살표를 표시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입구 및 출구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대기 구역(예: 줄, 주차장)에서 고객/선수/관중이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해당 공간에서 서로 소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계산대 또는 티켓 담당 직원이 고객/선수/관중과 소통할 때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 시 가능한 한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품 또는 장비 배달 시 운전자가 차량 안에 머무는 비접촉식 배달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달 인력에게 최소한 천 얼굴 가리개를 비롯하여 활동에 맞는 허용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품을 나르기(예: 배달 짐) 전후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예: 물건을 신기 전 손을 소독하고 모든 짐을 실은 후 다시 소독하기).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식품 서비스 활동 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식품 서비스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소매 서비스 활동 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소매 서비스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사무실 업무 활동 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사무실 업무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시간에 산책로에서 걷거나 뛰거나 산책하는 사람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예: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모이지 않도록 알리는 표지판 게시).

II. 장소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6 피트 이내에 있을 때(예: 코치, 관중) 적절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물리적 차단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직원이 고객/선수/관중과 소통할 때는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업무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외에도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조달, 제작하거나 얻어야 하며 해당 얼굴 가리개를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얼굴 가리개, 마스크,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 비축량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얼굴 가리개는 천(예: 직접 바느질한 천, 간단히 자른 천, 반다나),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얼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얼굴 가리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유형에 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센터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천 얼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철저한 얼굴 보호가 필요한 업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안전 장비는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개인의 얼굴 가리개(허용 가능한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나 얼굴 가리개를 스스로 충당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직원이 소장한 보호용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추가로 착용하는 것을 막거나 책임 당사자가 업무 성격상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직원은 미 노동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의 해당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장비, 차량 등 물건 공유와 금전 등록기 등 공유하는 표면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공유 물건이나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접촉할 때 직원이 장갑(작업용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거나, 접촉 후 손에 손을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어떻게 끼고, 벗고, 세척(해당하는 경우), 폐기하는지 교육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얼굴 가리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관리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청소, 소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구역, 날짜,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에 다음과 같이 손 소독 장소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흐르는 온수, 일회용 종이 수건.
 - 손 소독: 최소 알코올 60%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손 씻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장소에 비치.
 - 손 소독제는 직원 및 고객/선수/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전체에 비치해야 합니다. 손 소독제는 입/출구 등 편리한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눈에 띄게 더러운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손 소독제는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자주 만지는 표면에 사용하기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제품을 제공하고 직원에게 해당 표면 사용 전후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제품을 사용한 후 손을 소독하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장소와 자주 만지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철저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최소 근무시간이 끝날 때마다 또는 매일, 필요한 만큼 자주 하십시오.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표지판, 사용 중 표시, 기타 방법 등을 사용하여 가능한 경우 화장실 점유율을 줄이고 거리 두기 규칙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직원이 작업대를 바꿀 때마다 또는 새 도구 세트를 사용할 때마다 등록 소독 제품을 사용하여 장비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국에서 코로나 19에 효과적이라고 인증한 뉴욕주 환경보존부 등록 제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청소 및 소독 제품 또는 청소 및 소독이 안전을 위협하거나 물질 또는 장비, 기계를 손상시킬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중 이용할 수 있는 손 소독 장소를 배치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공급하거나 해당 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는 직원 및 고객/선수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노출 장소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및 자주 만지는 표면(예: 공유 장비, 금전 등록기, 기계, 차량, 난간, 이동식 화장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자나 확진자가 나온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관리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용한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 영향을 받은 구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운영을 중단할 필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구역에서 공기를 순환하십시오.
 - 24시간 후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유 공간, 공유 장비 등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 해당 구역을 적절히 청소 및 소독한 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접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건부의 "공공 및 민간 시설 직원이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된 후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고하십시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후 7일 이상 지난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기적 청소 및 소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물건(예: 결제 장치), 구역(예: 픽업 구역), 및/또는 표면(예: 문)을 다루는 활동 시 해당 구역 및 물건을 최소한 매일 청소 및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식음료를 공유(예: 뷔페 스타일 식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점심을 싸 오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점심을 먹을 때 직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C. 단계적 재개방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업무가 정상 수준이 되기 전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방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재개방 시 변화에 적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 수, 시간, 서비스 제공 고객/선수/관중 수를 제한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에서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지역사회 단체, 리그 등과 협력하여 해당 지침 표지판 등 직원 및 고객/선수/관중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만들고 직원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사이트,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미디어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선수/관중이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구두 의사소통과 표지판을 통해 질병관리센터 및 보건부의 개인 보호 장비 사용 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선수/관중이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소매점 내 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III. 절차

A. 선별 검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일일 건강 검진을 의무로 시행하고 가능한 경우 판매자에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검진은 배달 인력 또는 고객/선수/관중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선수/관중에게 건강 검진(선택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검진은 가능한 한 직원이 출근하거나 근무하기 전 원격(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으로 하거나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

- 검진을 완료하기 전 직원끼리 가까이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에게 질문하여 검진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 (a)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가까이 접촉했는지,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및/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증상이 있었는지.
- 코로나 19 관련 증상의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선수/관중에게 건강 검진을 완료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나 그것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근무 중 또는 후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경우 등 검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뀌는 경우 즉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검진 질문뿐 아니라 직원 일일 체온 검사는 미국 평등 고용 추진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정보(예: 체온 정보)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감염 가능성 있는 직원 또는 방문자가 현장에 들어와 체온 확인 등 검진 활동을 하는 인력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센터, 보건부,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 규약을 잘 알며 고용인이 인정한 개인이 검진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검진자는 최소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선별 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이 나온 직원은 일터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주고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양성 판정 사례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보건부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보건부의 "공공 및 민간 시설 직원이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된 후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에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인 직원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했던 직원이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를 위한 절차와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지역, 근무 시간 또는 날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접촉의 중심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으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검토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 및 방문자가 차후 해당 질문지에 명시된 대로 코로나 19 관련 증상을 겪는 경우 집단 접촉 지점을 확인하여 직원 및 고객/선수/관중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을 모두 계속해서 지킬 의무가 있는 현장 안전 감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접촉 지점이 확인된 경우 양성 판정을 받은 개인으로부터 알림을 받고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일터 또는 구역에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접촉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직원 포함)의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나 비접촉식 수단을 사용한 고객/선수/관중 및 배달 인력은 제외합니다. 직원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을 경우 접촉자를 확인하고 추적하여 알릴 수 있도록 일지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에 협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선수/관중에게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선택권을 주어 정보를 일지에 기록하고 접촉자 추적 시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선수/관중에게 정보를 남기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신분증이 필요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B. 추적

- 현장에서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즉시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현장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보건부에 협조하여 일터 내 모든 접촉점을 추적해야 하며 해당 직원이 처음으로 코로나 19 증상을 겪기 시작하거나 양성 판정을 받기(둘 중 먼저 일어난 것 기준) 48 시간 전에 시설에 출입한 모든 직원, 판매자, 기타인에 대하여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방 보건부는 감염 및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고 자가 격리 조치 등으로 이동을 제한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한 적 있다는 알림을 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알림을 받는 사람은 알림을 받은 즉시 자신의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에 명시된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IV. 운영자 계획

책임 당사자는 직원을 위해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완료된 안전 계획을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할 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사업체 재개방 안전 계획 건본을 제작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자원 확인처:

위험성 평가, 확산을 줄이는 행동 장려, 건강한 운영 및 환경 유지, 확진자 대비에 관한 일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센터의 청소년 스포츠 고려 사항(Considerations for Youth Sports)을 참고하십시오.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관리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귀하가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